|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공개 방법(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1호  <국무원 사회신용체제 건설기획요강(2014-2020년)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발[2014] 21호) 정신을 관철하고 실시하며 세무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징계하여 납세인이 법에 의거하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제고하며 세무기관의 집법행위를 규범하고 사회신용체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국가세무총국 ‘세무 위법안건 공고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세발 [1998] 156호), <국가세무총국 ‘납세신용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0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공개 방법(시행)>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7월 4일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공개 방법**  **(시행)**  **제1조** 세무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2조**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공개하되 법에 의거하여 공개, 공명정대, 등급별관리, 통일규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지시급 이상 세무기관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하며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의 공고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 등 경로 및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한다.  현급 세무기관의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 공개여부는 성급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4조** 검사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리, 행정처벌을 내린 세무기관은 공개한 안건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5조** 국가세무총국은 각급 세무기관이 조사하고 처리한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는 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공개한다.  (1) 납세인은 장부, 기장증빙을 위조, 변조, 은닉, 독단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지출을 많이 열거하거나 수입을 열거하지 않거나 적게 열거하는 경우 또는 세무기관이 신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신고를 허위로 진행하거나 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또는 추징세액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이며 납세액의 10/10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납세인이 납세금을 체납한 채 재산에 대하여 이전 또는 은닉의 수단을 취하여 세무기관의 체납세금 추징을 방해하며 추징세액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수출 허위신고 또는 기타 사기의 수단으로 국가 수출환급세액을 편법으로 수취하며 추징세액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4) 폭력, 협박의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5)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 또는 수출환급세액을 편법으로 수취, 세액공제에 사용되는 기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허위발급한 세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6) 일반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여 액면금액이 누계 5,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7) 상술한 기준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위법상황이 엄중하며 사회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급 세무기관이 조사하고 처리한 중대세수 위법안건은 세무기관이 <세무처리 결정서>와 <세무 행정처벌 결정서>에 따라 처리하고 법정기간 내 당사자가 행정심의를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심의 또는 법원판결을 거쳐 최종적인 확정효력을 가지는 안건을 지칭한다.  **제6조** 성급이하 세무기관이 공개하는 안건의 금액기준은 성급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제7조**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에 대한 공개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해당 명칭, 납세인의 식별번호, 조직기구대마,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단락은 생략, 이하 같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재무인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번호를 공개  (2) 자연인의 해당 성명, 성별, 신분증번호를 공개  (3) 주요 위법사실  (4) 관련 법률근거  (5) 행정처리, 행정처벌 상황  (6) 검사를 실시하는 단위.  공개한 중대세수 위법안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중개기구 및 종업인원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그 관련정보를 같이 공개한다.  **제8조** 본 공고에 따라 공개되는 당사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1) 납세신용 등급은 D급으로 직접 판단하여 <납세신용 관리방법(시행)>의 D급 납세인에 관한 관리조치를 적용하며,  (2) 추징해야 할 세금이 체납된 당사자에 대하여 출국 전 규정에 따라 납세금,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등 유관규정에 따라 출입국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하며,  (3) 세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법률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고 집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5년 미만인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등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 등 기관에 통지하여 담당기업의 법정대표인,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4) 공개한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신용수집업 관리조례> 등 유관규정에 따라 신용수집기구에 통보하고 금융기구에 제공하여 융자신용에 참고하여 사용하며,  (5)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행정처벌 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피집행인의 명단에 포함시키고 고소비 등을 제한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며,  (6) 세무기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고 법에 의거하여 기타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9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내 세무기관은 인터넷사이트에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공개한다.  **제10조**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2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개란에서 삭제한다.  **제11조** 당사자가 공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리, 행정처벌을 결정한 세무기관이 책임지고 검토 및 처리한다.  **제12조**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이상’, ‘이하’는 본 급, 본 수를 포함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  **办法(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1号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印发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的通知》（国发〔2014〕21号）精神，惩戒严重涉税违法行为，提高纳税人依法纳税意识，规范税务机关执法行为，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税务违法案件公告办法〉的通知》（国税发〔1998〕156号）、《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0号）的规定，国家税务总局制定了《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办法（试行）》，现予以发布，自2014年10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4年7月4日  **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办法**  **（试行）**  **第一条**　税务机关依照本办法的规定，定期向社会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  **第二条**　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应当遵循依法公开、公平公正、分级管理、统一规范的原则。  **第三条**　地市级以上税务机关应当通过门户网站定期向社会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同时可以根据本地区实际情况，通过税务机关公告栏、报纸、广播、电视、网络媒体等途径以及新闻发布会等形式向社会公布。  　　县级税务机关是否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由省级税务机关决定。  **第四条**　按照谁检查、谁负责的原则，作出行政处理、行政处罚的税务机关应当对公布案件信息的真实性与准确性负责。  **第五条**　国家税务总局公布各级税务机关查结的符合下列标准的税收违法案件信息：  　　（一）纳税人伪造、变造、隐匿、擅自销毁账簿、记账凭证，或者在账簿上多列支出或者不列、少列收入，或者经税务机关通知申报而拒不申报或者进行虚假的纳税申报，不缴或者少缴应纳税款，查补税款金额500万元以上，且占应纳税额百分之十以上的；  　　（二）纳税人欠缴应纳税款，采取转移或者隐匿财产的手段，妨碍税务机关追缴欠缴的税款，查补税款金额500万元以上的；  　　（三）以假报出口或者其他欺骗手段，骗取国家出口退税款，查补税款金额500万元以上的；  　　（四）以暴力、威胁方法拒不缴纳税款的；  　　（五）虚开增值税专用发票或者虚开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虚开税款数额1000万元以上的；  　　（六）虚开普通发票，票面额累计5000万元以上的；  　　（七）虽未达到上述标准，但违法情节严重、有较大社会影响的。  　　各级税务机关查结的重大税收违法案件，是指税务机关作出了《税务处理决定书》和《税务行政处罚决定书》，并且在法定期间内，当事人没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或者经行政复议或法院裁判最终确定效力的案件。  **第六条**　省以下税务机关公布案件的金额标准由省税务机关确定。  **第七条**　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应当包括以下内容：  　　（一）对法人或者其他组织，公布其名称、纳税人识别号、组织机构代码、注册地址，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姓名、性别及公民身份号码（隐去出生年、月、日号码段，下同），负有直接责任的财务人员姓名、性别及身份证号码；  　　（二）对自然人，公布其姓名、性别、身份证号码；  　　（三）主要违法事实；  　　（四）相关法律依据；  　　（五）行政处理、行政处罚情况；  　　（六）实施检查的单位。  　　对公布的重大税收违法案件负有直接责任的中介机构及从业人员，税务机关可以依法一并公布其相关信息。  **第八条**　对按本公告公布的当事人，依法采取以下措施：  　　（一）纳税信用级别直接判为D级，适用《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关于D级纳税人的管理措施；  　　（二）对欠缴查补税款的当事人在出境前未按照规定结清应纳税款、滞纳金或者提供纳税担保的，税务机关可以依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等有关规定，通知出入境管理机关阻止其出境；  　　（三）因税收违法行为，触犯刑事法律，被判处刑罚，执行期满未逾五年，税务机关可以依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等有关规定，通知工商行政管理等机关限制其担任企业的法定代表人、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四）对公布的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税务机关可以依据《征信业管理条例》等有关规定向征信机构通报，供金融机构融资授信参考使用；  　　（五）对税务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的行政处罚案件的当事人，由执行法院依法纳入失信被执行人名单，采取限制高消费等惩戒措施；  　　（六）税务机关根据实际情况依法采取其他严格管理的措施。  **第九条**　每季度终了后30日内，税务机关在其门户网站上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  **第十条**　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自公布之日起满2年的，从公布栏中撤出。  **第十一条**　被公布的当事人对公布内容产生异议的，由作出行政处理、行政处罚决定的税务机关负责复核和处理。  **第十二条**　本公告所称“以上”“以下”均含本级、本数。  **第十三条**　本办法自2014年10月1日起施行。 |